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7

발의연월일: 2020. 10. 30.

발 의 자 : 홍석준·김용판·임이자

추경호 · 김성원 · 강대식

정희용 · 송언석 · 박성중

강기윤・김승수・홍준표

엄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 ①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학교 설립은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한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 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 ①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
	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학교 설립은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 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
	립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
	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
	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